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62 호 2016. 6. 29(수)

## 조 례

남해군조례 제2178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
남해군조례 제2179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2
남해군조례 제2180호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37
남해군조례 제2181호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41

## 공 고

제2016 - 469호	남해군 관광발전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43
제2016 - 472호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7
제2016 - 485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54
제2016 - 498호	남해군 지적재조사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6
제2016 - 500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63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6, 행정 3046)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178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6월 29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군수가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서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관할구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 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①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

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종 집회, 행사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행사 등의 추진주체가 수거하고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민간대행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군수는 지급한 대행료에 대해서 매년 대행계약이 끝난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료의 환수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 악취 발생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흘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이 아닌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분리·보관·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의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시간을 지켜 배출하되,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③ 가정(농업활동 포함)에서 발생한 연탄재는 무상으로 배출하되,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연탄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은 배출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배출 품목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배출 현장에서 폐콘크리트·폐목재 등으로 분류하여 폐기물의 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하며, 법과 조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군수가 지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법과 조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 배출 및 수거일과 시간·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제8조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배출자 소재과약이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지대 단독주택, 도서지역 등 청소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일정 장소와 지정 수거일을 정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당사자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를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며, 군과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 제공 등으로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단속활동을 위하여 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법 제14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종류 및 규격, 색상, 사양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변조 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종량제 봉투 제작 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광고주의 신청을 받아 게재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서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는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대행계약자를 정하여 제작·공급·판매 하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읍·면장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공공용 봉투는 공공쓰레기 수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은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④ 판매소의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의 판매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2. 군수가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경우
3. 군수가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4. 불법제작 유통된 종량제 봉투를 진열 및 판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1년(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14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공급, 판매업소 확인) 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제작, 공급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 공급대행자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과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과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 1과 같다.
2.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배출자의 신고에 따라 군수 또는 대행업체 대표가 직접 부과·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 절차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확보를 위하여 재활용 센터 등이 재활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할 경우 무상 수거 또는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및 운영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 봉투의 가격 결정) ① 제15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비용
2. 종량제 봉투 제작에 드는 비용
3. 적정 판매 이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업무의 대행 및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종량제 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5조 관련)

[단위:원]

규격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5 l	91	9	100
10 l	182	18	200
20 l	364	36	400
50 l	910	90	1,000
100 l	1,820	180	2,000

## [별표 2]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제15조 관련)

[단위:원]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1	냉장고	500 l 이상	8,000	
		300 l 이상	6,000	
		300 l 미만	4,000	
2	텔레비전	24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장식대	2,000	
3	세탁기	10kg이상	6,000	
		10kg미만	4,000	
4	냉·난방기	세로형(폭50cm당)	5,000	
		벽면부착용	4,000	
		환풍기(팬)	3,000	
5	에어컨실외기	모든 규격	3,000	
6	오븐렌지	폭1m이상	4,000	
		폭1m미만	2,000	
7	전자·전기·가스렌지	모든 규격	2,000	
8	가스렌지 후드	모든 규격	2,000	
9	탈수기	모든 규격	3,000	
10	청소기	모든 규격	2,000	
11	난로	모든 규격	3,000	
12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2,000	
13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4,000	
14	VTR, 타자기	모든 규격	2,000	
15	전기장판	모든 규격	2,000	
16	공기청정기, 정수기, 냉온수기, 가습기	높이1m이상	3,000	
		높이1m미만	2,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17	선풍기	모든 규격	2,000	
18	전기밥솥(통)	모든 규격	2,000	
19	노트북	모든 규격	2,000	
20	컴퓨터	본체	2,000	
		프린터	2,000	
		모니터	1,000	
		키보드	1,000	
21	팩스기	모든 규격	2,000	
22	전자복사기	모든 규격	3,000	
23	오디오	폭1m이상	4,000	
		폭1m미만	3,000	
		스피커 1개당	1,000	
		장식장	2,000	
24	보일러	모든 규격	3,000	
25	옥매트(건강매트)	모든 규격	3,000	
26	장롱, 옷장	폭30cm당	3,000	
27	침대	2인용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1인용	10,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28	식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29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30	문갑	폭1.5m 이상	4,000	
		폭1.5m 미만	3,000	
31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32	서랍장	1단당	1,000	
33	장식장, 찬장	폭1.5m 이상	6,000	
		폭1m 이상	5,000	
		폭1m 미만	3,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34	책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책꽂이	2,000	
35	파일 캐비닛	높이1m 이상	3,000	
		높이1m 미만	2,000	
36	캐비닛	높이1.8m 이상	5,000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3,000	
37	싱크대	가로1m 당	2,000	
		찬장 폭1m 당	3,000	
38	간이 소파 (팔걸이 없음)	3인용 이상	4,000	
		2인용	3,000	
		1인용	2,000	
39	의자	학생용	1,000	
		업소(사무)용	2,000	
40	피아노	어프라이트	15,000	
		그랜드	20,000	
		오르간	4,000	
41	쌀통	모든규격	2,000	
42	유리종목(거울, 액자)	m <sup>2</sup> 당	1,000	
43	병풍	모든 규격	3,000	
44	문짝	0.9m×1.8m당	3,000	
45	자전거	성인용	2,000	
		어린이용	1,000	
46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47	보행기, 붕붕차	모든 규격	1,000	
48	FRP 물통	200 l 당	2,000	
49	PE 물통	200 l 이상	3,000	
		100 l 이상	2,000	
		100 l 미만	1,000	
50	간판	m <sup>2</sup> 당	2,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51	세면기, 수족관	모든 규격	2,000	
52	변기	모든 규격	3,000	
53	욕조	모든 규격	5,000	
54	실버카	모든 규격	2,000	
55	카펫	m <sup>2</sup> 당	2,000	
56	타이어	소형	3,000	
57	시계	입식용	2,000	
		벽걸이용	1,000	
58	이불	솜이불	3,000	
		홀이불(담요)	2,000	
59	쿠션, 베개, 가방	모든 규격	1,000	
60	아이스박스	모든 규격	1,000	
61	화분	모든 규격	1,000	
62	신발장	모든 규격	2,000	
63	책장	모든 규격	3,000	
64	공사장생활폐기물	1톤당	30,000	
65	암롤박스(롤온박스)	4.5m <sup>3</sup> 1대당	60,000	

※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에 준함.

남해군 조례 제2179호

##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6월 29일

### 남 해 군 수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 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 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남해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 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사전대비단계, 비상단계 근무 및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 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안전총괄과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상황이 급박할 시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하고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협의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제4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 3. 재난 피해 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 5.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
-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8.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책본부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 3. 통제관은 재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 4.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필요시 통제관이 담당관이 될 수 있다.
  - 5. 실무반은 군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 1항 각 호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제) ① 대책본부 운영체제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나뉜다.

② 준비단계의 운영체제는 별표 2와 같고, 비상단계의 운영체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 업무와 역할은 별표 3과 같다.
- 2.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 업무와 역할은 별표 4와 같다.

③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3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군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7조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



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 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제4장 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기능)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른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총괄과장, 재난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 및 유관 기관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의 간사는 재난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 팀장으로 한다.

③ 대책본부회의의 주관은 의장이 하고, 의장의 부재 시에는 부의장이 주관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며,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지역 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 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4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며, 재난 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 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법 제38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 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6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군 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8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제19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피해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피해를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20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 제21조(전결사항) 대책본부 전결사항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제5조 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남해군 주관부서
교육부	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행정과
미래창조과학부	2. 우주전파 재난 3. 정보통신 사고, 4.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행정과
외교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안전총괄과 행정과
법무부	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행정과
행정자치부	8. 정부중요시설 사고	안전총괄과 행정과
문화체육관광부	9.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사업소
농림축산식품부	10. 가축 질병 11. 저수지 사고	농축산과 건설교통과
산업통상자원부	12.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3. 원유수급 사고 14.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5. 전력 사고, 16.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과 경제과 - 경제과 -
보건복지부	17. 감염병 재난, 18.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환경부	19.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0.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환경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남해군 주관부서
	21.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2.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3. 황사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
고용노동부	24.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해당부서 안전총괄과
국토교통부	25.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우리도 해당 없음) 26. 고속철도 사고 27.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28. 도로터널 사고 29.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0. 육상화물운송 사고, 31. 지하철 사고, 32. 항공기 사고 33.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34.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교통과 -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교통과 - 도시건축과
해양수산부	3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6. 조수(潮水) 3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8.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국민안전처	39.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 외한다) 40. 화재·위험물 사고 41.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4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 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 는 재난 및 사고 44.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남해군 주관부서
금융위원회	45.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46. 원자력안전 사고, 47.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문화재청	<b>48. 문화재 시설 사고</b>	<b>문화관광과</b>
산림청	49. 산불, 50. 산사태	환경녹지과
<p>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군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p>		

**[별표 2]****준비단계 군 대책본부 운영체계(제7조 제1항 관련)****1. 상시대비단계**

가. 편성기준 : 평상시 - 태풍정보, 호우·대설 예비특보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	안전총괄과 1명, 당직 근무자

**2. 사전대비단계**

가. 편성기준 : 태풍 예비특보, 호우·대설 주의보 발효시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	안전총괄과 2명, 당직근무자, 각부서 1명, 읍면 2명

**비고**

- 준비단계는 안전총괄과 소속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 본부장·차장·통제관 및 각 부서·읍면장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 인원수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군 대책본부 운영체계(제7조)

1.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 태 풍 : 주의보 발효시
- 호우·대설 : 경보 발효시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업무주관부서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	
<b>실 무 반</b>		
근무인원	총 3+ $\alpha$ 명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	- 안전총괄과 (1+ $\alpha$ )
	상황보고서작성,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 안전총괄과 (1+ $\alpha$ )
	행정지원팀	- 행정과(1+ $\alpha$ )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alpha$ )	긴급생활지원( $\alpha$ )                      재난현장환경정비( $\alpha$ ) 긴급통신지원( $\alpha$ )                      시설응급복구( $\alpha$ ) 에너지기능복구( $\alpha$ )                      재난수습홍보( $\alpha$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alpha$ )              교통대책( $\alpha$ ) 의료·방역( $\alpha$ )                              자원봉사관리( $\alpha$ ), 사회질서유지( $\alpha$ )                              수색·구조·구급( $\alpha$ )	
관계부서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beta$ )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남해소방서, 39사단118연대2대대 등)	

※ 유관기관( $\beta$ )과 상시연락 체계 구축



나. 비상2단계

- 태 풍 : 경보 발효 시
- 호우·대설 : 경보 발효 후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시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업무주관부서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	
<b>실 무 반</b>		
근무인원	총 $4 + \alpha + \beta$ 명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	- 안전총괄과 ( $1 + \alpha$ )
	상황보고서작성,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 안전총괄과 ( $2 + \alpha$ )
	행정지원팀	- 행정과( $1 + \alpha$ )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alpha$ )	긴급생활지원( $\alpha$ )                      재난현장환경정비( $\alpha$ ) 긴급통신지원( $\alpha$ )                      시설응급복구( $\alpha$ ) 에너지기능복구( $\alpha$ )                      재난수습홍보( $\alpha$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alpha$ )              교통대책( $\alpha$ ) 의료·방역( $\alpha$ )                              자원봉사관리( $\alpha$ ), 사회질서유지( $\alpha$ )                              수색·구조·구급( $\alpha$ )	
관계부서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beta$ )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남해소방서, 39사단118연대2대대 등)	

다. 비상3단계

- 태 풍 : 경보 발효 후 극심한 피해 발생시
- 호우·대설 : 경보 발효 후 광역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시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업무주관부서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	
<b>실 무 반</b>		
근무인원	총 $5 + \alpha + \beta$ 명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	- 안전총괄과 ( $1 + \alpha$ )
	상황보고서작성,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 안전총괄과 ( $2 + \alpha$ )
	행정지원팀	- 행정과( $2 + \alpha$ )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alpha$ )	긴급생활지원( $\alpha$ )                      재난현장환경정비( $\alpha$ ) 긴급통신지원( $\alpha$ )                      시설응급복구( $\alpha$ ) 에너지기능복구( $\alpha$ )                    재난수습홍보( $\alpha$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alpha$ )            교통대책( $\alpha$ ) 의료·방역( $\alpha$ )                          자원봉사관리( $\alpha$ ), 사회질서유지( $\alpha$ )                      수색·구조·구급( $\alpha$ )	
관계부서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beta$ )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남해소방서, 39사단118연대2대대 등)	

2.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비고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화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안전총괄과
상황보고서 작성팀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의회관련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1.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난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재난현장 대응인력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비상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재난수습 주관부서
행정지원팀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행정과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조정	주민복지실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비고
긴급생활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업무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 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군 복구현황 파악	환경녹지과
	2. 통신시설 긴급 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군 복구현황 파악	행정과
안정지원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사업소
등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군 복구현황 파악	경제과
12개 협업 기능 반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8.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기획감사실
	1. 국가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안전총괄과
	1.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비고
12개 협업 기능 반	긴급 생활 안정 지원 등	3.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4.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의료·방역반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자원봉사 관리반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주민복지실
	사회질서 유지반	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3.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남해경찰서
	수색,구조· 구급반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업무 2. 재난지역 구급 업무 3. 재난현장 특성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 업무	남해소방서
유관기관 등 지원반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수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3. 근무방법**

- 실무반원의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 본부장·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무반의 편성기준을 참조하여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 비상단계별 가동기준은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군 대책본부 운영체계(제7조)

1. 편성기준

①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군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②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재난주관부서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수습부서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5 + a + \beta$ 명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 안전총괄과 (1)
	상황보고서 작성	- 재난수습주관부서(1) - 안전총괄과(1)
	행정지원	- 행정과(2+ a)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a)	긴급생활지원(a)                      재난현장환경정비(a) 긴급통신지원(a)                      시설응급복구(a) 에너지기능복구(a)                    재난수습홍보(a)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a)            교통대책(a) 의료·방역(a)                          자원봉사관리(a), 사회질서유지(a)                      수색·구조·구급(a)	
관계부서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남해소방서, 39사단118연대2대대 등)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구 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총괄반	① 재난상황 관리기능	<b>상황관리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li> <li>○ 상황판단회의 주관</li> <li>○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li> <li>○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li> <li>○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li> <li>○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li> <li>○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li> </ul>
		<b>상황보고서 작성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li> </ul>
		<b>행정지원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li> <li>○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li> <li>○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li> <li>○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li> </ul>
협업 기능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li> <li>-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li> </ul> </li> <li>○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li> <li>○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li> </ul>
	③ 긴급통신 지원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li> <li>○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li> <li>○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li> </ul>
	④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li> </ul>
	⑤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li> <li>○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li> </ul>
	⑥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li> <li>○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li> </ul>
	⑦ 교통대책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li> <li>○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li> </ul>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li> <li>○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소 등)</li> <li>○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li> </ul>
	⑨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li> <li>○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li> </ul>
	⑩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li> <li>○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li> <li>○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li> </ul>

	⑪ 사회질서 유지 기능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⑫ 재난수습 홍보 기능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⑬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기능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3. 근무방법 : 별표3 자연재난 근무방법과 동일



[별표 5]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18조 관련)**

구분	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kg)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	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

대책본부 전결사항(제21조 관련)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본부장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유관기관 파견요구		○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피해조사 및 복구	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 검토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 [별지 제1호 서식] 제19조 관련

###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 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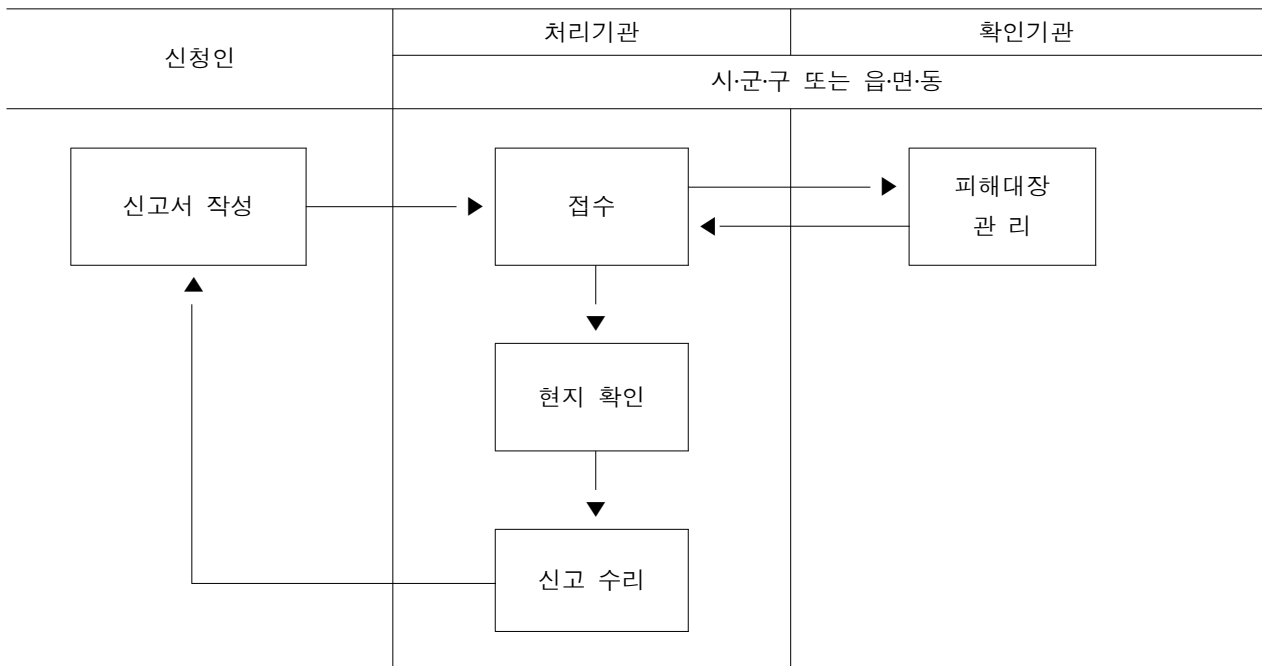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제19조 관련

[관리번호:       ]

**피해 대장**

확 인 자	[	중앙 직	성명	(인)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사자		직	성명	(인)

**1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2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3**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남해군 조례 제2180호

##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6월 29일

### 남 해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건립한 남해군 게스트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해군 게스트하우스(이하 "게스트하우스"라고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게스트하우스"란 남해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편안한 휴식 및 정보교류의 공간지원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게스트하우스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이용허가) ①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②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이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이용료)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게스트하우스 명칭 및 개요

명 칭	위 치	내 용	비 고
서상 게스트하우스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1687번길 14(서상리 1316-5)	□ 연면적 : 442.97m <sup>2</sup> • 1층 : 게스트룸 2인실 1칸, 4인실 1칸, 12인실 1칸 주방, 샤워실, 화장실, 탕비실, 기계·전기실 등 • 2층 : 게스트룸 12인실 1칸, 14인실 1칸, 샤워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	

[별표 2]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1. 이용료

(단위: 원)

구 분	대학생 이하		일 반		비 고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게스트룸 2인실 및 4인실	12,000	15,000	17,000	20,000	
게스트룸 12인실 및 14인실	10,000	13,000	15,000	18,000	
○ 성수기 : 7월~8월, 공휴일 및 공휴일전일 ○ 1인 1박 기준 ○ 가족동반 만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 1박은 당일 14:00~익일 12:00까지					

[별표 3]

이용료 반환기준

내 용		반환기준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스트하우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li> <li>·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li> </ul>	납부한 이용료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전일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li> </ul>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료의 100분의 75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료의 100분의 50

남해군 조례 제2181호

###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6월 29일

### 남 해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체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 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공원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6 - 469호

남해군 관광발전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관광발전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관광발전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남해군 관광발전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남해군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남해군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개선업무 등 협의회의 기능과 “법인”으로서의 협의회 성격을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남해군의 장단기 관광시책 개발,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등 협의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남해군과 협의회의 유기적 업무연계를 위한 협업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회계에 관한 감독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이 조례 제정과 함께 그 기능이 유사한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등)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이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참고사항

나.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 (2) 연락처 : (전화)055-860-8602, (팩스)055-860-3748, (email) [jp8701@korea.kr](mailto:jp8701@korea.kr)

붙 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남해군 관광발전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남해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남해군 관광협의회"(이하 "협회"라 한다)란 남해군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설립) 협의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 제48조의9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남해군의 장단기 관광진흥시책 개발
2. 문화·관광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4.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5.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한 마케팅 활동
6.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문화·관광에 관한 사무
7. 협의회 목적 달성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수익사업

제5조(협업회의) ① 남해군과 협의회는 유기적인 업무 연계를 위하여 협업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비정기회의로 하고, 협의회 업무 주무부서장 또는 법인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소집한다.

③ 회의의 구성원은 주된 의제에 따라 다음의 범위에서 각각 군수와 법인의 대표가 정한다.

1. 의제 관계 공무원 : 위원장을 포함한 4명
2. 협의회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임원 또는 회원 : 5명

④ 회의의 위원장은 군수 또는 부군수로 하고,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감독)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에 따른 법인의 운영 및 사업,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감독과 감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7조(협조) ① 남해군과 협의회는 성실·신뢰의 원칙에 따라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 진흥에 관한 공익성이 뚜렷한 협의회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협의회는 남해군의 관광 진흥정책 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사항은 「민법」, 「지방재정법」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6 - 472호

##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이 개정되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고, 주민참여대상 감독 상한액 설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제1조 : 제1조부터 법령과 위원회의 준말을 규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수정함

나. 제2조 : 제1항에 성별 60퍼센트이하 규정 추가 및 당초 제1조에 있던 법령과 위원회의 준말을 규정함. 제2항은 영제106조와 동일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아니므로 삭제함. 제3항은 6급 무보직 주사와 혼동을 우려하여 팀장으로 변경

다. 제3조 : 용어순화 및 위원장 사고시 대리자를 군수가 지명하는 자에서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하는 자로 변경

라. 기존 조례 제4조 : 기능 전체를 삭제함, 일단 법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만 위임했고 기능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으며 기능은 법 제32조에서 모두 똑같이 정하고 있어 삭제함

마. 제4조 : 제1항에 회의는 위원장이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도록 함. 제2항은 상위법령에 그대로 있어 삭제함, 제3항의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함

바. 제5조 : 소위원회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함, 제6항은 같은 조례 제8조와 중복되어 삭제함, 제7항은 6급무보직 주사와 혼동을 우려하여 팀장으로 변경

사. 제6조 : 계약담당자를 군수로 변경하고, 군수에계를 위원장에게로 변경

아. 기존 조례 제11조 : 위원의 해촉은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함

자. 제10조 : 제1항의 내용은 영제60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대로 규정하고, 제2항에 그 상한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하여 일반건설공사는 추정가격 5억원미만, 전문건설, 전기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한금액을 설정함.

차.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4조 관련)을 삭제하고 실비지급기준(제12조제2항 관련)을 신설함.

카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함.

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 연락처 : 전화055-860-3162, 팩스860-3705,  
e-mail : [soo0909@korea.kr](mailto:soo0909@korea.kr)

#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경리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간사는 경리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심의요청 등)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설공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 전문건설·전기공사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제11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① 영 제57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를 관할하는 지역의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을 군수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사구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사량이 많은 지역의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와 제11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는 별표와 같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 회의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서명
-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등 위원들의 발언요지
- 4. 의결사항
- 5. 그 밖의 중요 사항 등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를 “「남해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사에 대해서”로 한다.

**【별표】**

**실비 지급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	자문비	200,000	
	일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교통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0,000	1회당 20,000원, 월 4회까지 지급 가능

남해군 공고 제2016 - 485호

##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9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 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김명O	주소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하천명		광천천		
공사(점용 · 사용) 개요	위치	경남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1001		
	면적	1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6년 6월 9일 ~ 2016년 12월 31일		
	목적 및 사유	진입로		
시행자 (점용·사 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최형O	주소	경남 남해군 서면
소하천명		중앙천		
공사(점용 · 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서면 서상리 1684		
	면적	10.2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6년 4월 26일 ~ 2020년 12월 31일		
	목적 및 사유	진입로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공고 제2016 - 498호

## 남해군 지적재조사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적재조사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조항인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조항 삭제(안 제13조)
- 나.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담당 부서장, 팀장은 담당팀장으로 명시(안 제14조제2항)
- 다. “자료”를 “사람으로”로 변경(안 제14조제3항)
- 라. 남해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기능과 사무분장의 중복으로 사무분장 조항 삭제(안 제16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 연락처 : 전화055-860-3473, 팩스860-3700, e-mail : namnam80@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팀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겸직한다.

제14조제3항 중 “자료” 를 “사람으로” 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u>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분쟁의 성질상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u></li> <li>2. <u>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u></li> <li>3. <u>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u></li> </ol>	<p>&lt;삭 제&gt;</p>
<p>제14조(조직 및 구성) ① (생 략)</p> <p>② <u>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실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업무를 담당한다.</u></p> <p>③ <u>추진단의 팀원은 지적측량에 관한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u></p>	<p>제14조(조직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팀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겸직한다.</u></p> <p>③ _____</p> <p>----- <u>사람으로</u> -----.</p>
<p>제16조(사무분장) <u>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관련 법령·제도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u></li> </ol>	<p>&lt;삭 제&gt;</p>

- 2.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사업지구 선정에 관한 사항
- 3. 지적재조사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주민설명회 및 사업지구 추진 동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 5. 사업지구 사전조사표 작성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 6. 사업지구 경계점 설치 및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
- 7.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8. 사업시행자, 대행자 교육 및 지적재조사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9. 사업지구 성과열람,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0. 사업지구 청산금 산출·정산 및 행정심판, 소송에 관한 사항
- 11. 지적정보시스템 등록·관리
- 12.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현황조사·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13.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정 및 운영
- 14.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15. 경계설정·조정·결정 및 지적확정 측량 검사에 관한 사항
- 16.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 17.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에 운영에 관한 사항
- 1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업무
- 19.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 20.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1. 디지털지적 표준 관련 법제도 마련

22.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 의 견 제 출 서

1. 자 치 법 규 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공고 제2016 - 500호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교체설치를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24일

### 남 해 군 수

- 1.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설치
- 2. 시 행 청 : 경상남도 남해군 건설교통과
- 3. 행정예고(공고)기 간 : 2016. 06. 24. ~ 2016. 07. 13.(20일간)
- 4. 공 고 방 법 :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5. 교 체 장 소 : 남해군 관내 (4개소 - 4대)

구분	위치	운영시간	비고
교체	남해군청 앞 삼거리	08:00 ~ 20:00	자동식 카메라
교체	남해읍 중앙사거리	08:00 ~ 20:00	자동식 카메라
교체	남해읍 효자문삼거리	08:00 ~ 20:00	자동식 카메라
교체	남해읍 유림오거리	08:00 ~ 20:00	자동식 카메라

6. 설 치 목 적 : 원활한 도로교통 흐름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함

7. 관 련 근 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8. 의 건 제 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5-860-3708)

라. 보내주실 곳 : 경상남도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서면리 24-1)

바.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TEL. 055-860-3453)

※ 붙임 : 의견 제출서 서식. 끝.

**【붙임】**

## 의 건 제 출 서

<b>사 업 명</b>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b>의 건 제 출 자</b>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단속방법 변경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도

○ 남해군청 앞 삼거리



○ 남해읍 중앙사거리





○ 남해읍 효자문삼거리



○ 남해읍 유림오거리

